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 (찬성자 10명)

나. 의안번호 : 제 530 호

다. 발의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 2.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9조제1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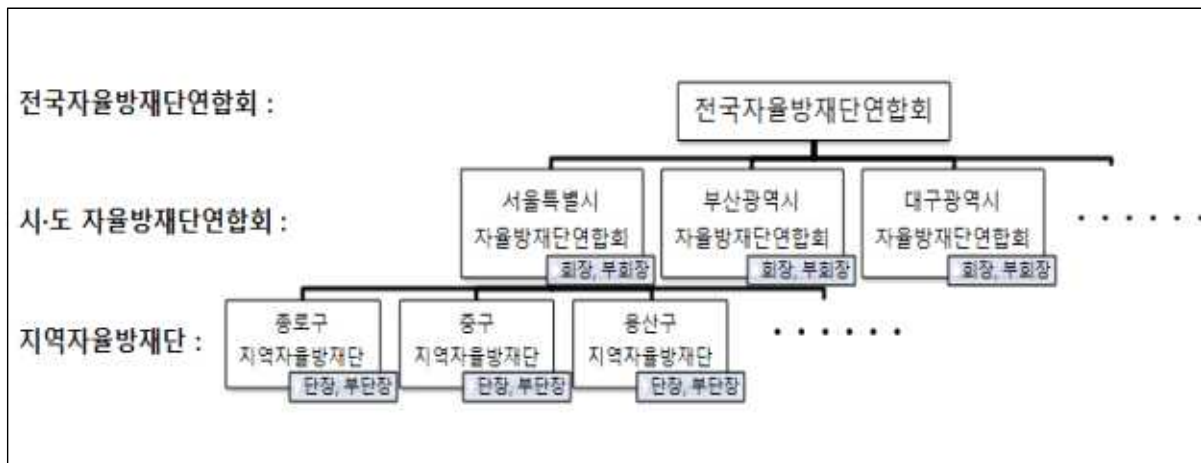
- 본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의 해임사유 중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원의 해임) (생략) 1. 회원이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제9조(회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 <u>장기간의 심신쇠약</u> 로 ——— 2.~3. (현행과 같음)

### ■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현황

- 자율방재단연합회 체계를 살펴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하위에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해당하는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있고, 그 하위에 자치구 차원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위치하고 있음.



[그림]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체계

-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제66조1)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법 제66조의22)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하고,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3)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됨.
- 이 때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이 됨.
- 한편,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된 총 50명의 회원과 회장, 부회장, 감사(2명), 사무총장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 1)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서울시 자율방재단 현황

### ○ 설치 근거

-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

○ 설치일자 : 2013.1.1. ※ 2기 출범 : '16.7.15~'19.7.14

### ○ 구성 및 기능

- 구성인원 : 50명 (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
- 임원현황 : 회장, 부회장, 감사(2명), 사무총장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	강남구 자율방재단장
부회장	심○○	구로구 자율방재단장
감사	유○○	도봉구 자율방재단원
감사	이○○	광진구 자율방재단장
사무총장	라○○	강남구 자율방재단원

### - 주요기능

-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장애’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안 제9조제1호)

- 안 제9조제1호는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인 자치구 자율방재단 단장 또는 부단장의 해임사유 중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차별소지가 없는 새로운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의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회원의 해임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할 경우 장애인 차별 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동일한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4)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라고 수정하여 개정(‘16.2.3.)된 바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만일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